◈ 상주시 공고 제2017-112호

「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02월 15일

상 주 시 장 


#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   - 유물수집 및 관리 사항 일부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유물 관리 기준 마련

2. 주요내용
   -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 의무화(안 제4조)
   - 유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)

3. 의견제출
 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:상주박물관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 (전화 054-537-6753, E-mail angel468@korea.kr, FAX 054-537-6759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다. 의견제출할 곳 : (우 37128 경북 상주시 경천로 684)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
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화번호 :

| 규칙안 내용 | 의　견 | 비　고 |
|---|---|---|
| | | |